학생복지시설 운영규정

제 정 2018. 2

제1조 (목적과 범위) ①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.) 재학생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교내에 설치하는 각종 학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운영의 기본방향) ① 학생복지시설은 학생의 개인적 취미활동, 단체활동 또는 대학생활을 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함에 우선을 둔다.

② 학생복지시설의 혜택은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한다.

③ 학생복지시설의 운영방침은 학생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.

제3조 (관장부서) ①학생복지시설은 학생복지처에서 관장하며 생활관 체력단련실은 생활관에서 관장한다. 단, 필요할 경우 학생회 또는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에 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복지처의 지도 감독 하에 운영 할 수 있다.

②학생복지시설의 유지보수 및 청소는 관리팀에서 담당한다.

제4조 (학생복지위원회) ①학생복지시설 사용의 기본방침과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복지위원회를 두며, 학생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 (이용자) 학생복지시설은 본 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 (이용시간) 학생복지시설 이용시간은 시설사용 기준에 준하며, 체육시설 이용시간은 평일 06:00~22:00으로 한다. 단, 총장이 필요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7조 (이용의 제한) 다음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.

1. 시설의 개보수
2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
제8조 (용도변경) 각종 학생복지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9조 (준수사항) 학생복지시설 이용자는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본 대학교에서 정한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